

# 교직원상조회 경조 보조금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한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07.03.01		16		
2	2012.05.01		17		
3	2016.12.09		18		
4	2020.06.01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교직원상조회 경조 보조금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한 규정

**제1조** (적용범위) 한국항공대학교 교직원 상조회 회원(이하 '회원'이라 한다)에 대한 각종 경조보조금, 위로금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2조** (경조보조금) ① 신입회원은 회비납부 익일부터 경조보조금 수령의 자격을 가진다.  
② 회원에 대한 경조보조금의 종류, 구분 및 금액은 [별표 1]에 의한다.  
③ [별표 1]의 경조 보조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
**제3조** (위로금) ①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연간 1회에 한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.

1.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장기 치료를 받으며 결근할 때
2. 화재나 수해 또는 기타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막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 
(사학연금 재해부조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)

② 위로금 지급은 [별표 1]의 기준에 의하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
**제4조** (대여금) ① 회원은 [별표 1]의 기준에 따라 대여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, 별도로 정한 약정에 의하여 상환한다.

② [별표 1]에서 정한 대여기준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
③ [별표 1]에서 정한 대여한도는 초과할 수 없으며, 회원의 대출상황 등에 따라 이를 제한 할 수 있다.

**제5조** 삭제

**제6조** (기금 운영 및 관리) ① 상조회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
1. 상조회 기금 : 경조보조금, 위로금 및 대여금 지급
2. 삭제

② 상조회 기금은 다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한다.

1. 상조회 기금 운영위원 : 상조회 회칙 제4조에서 정한 임원
2. 삭제

**제7조** 삭제

**제8조** (경조보조금 등의 청구) ① 회원은 제2조 내지 제5조에 의거 경조보조금, 위로금을 청구할 경우에 사유 발생일을 전후하여 그 사유를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전 항의 경조보조금, 위로금은 청구 통지에 의하여 지급 의무를 가지며,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. 단,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**제9조** (수령자) ① 경조보조금, 위로금의 수령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축의금 : 회원
2. 조위금 : 회원 또는 유족 대표
3. 위로금 : 회원 또는 가족 대표
4. 삭제

② 유족에 대한 순위는 공무원연금법 지급 순위에 의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<개정 2020. 6. 1>

상조회 사업운영 내역

구 분		내 용	비 고
1. 개인별 가입금		-	찬조금 및 보조금을 제외한 회원 가입 당시의 자산을 회원수로 환산하여 산정
2. 1인당 회비		월 10,000원	
3. 1인당 대출 한도액		2,000,000원	기 대여금 전액 상환 후 신규 대여 가능 (대출이자 연 4%)
4. 대출 원금상환		일시 및 월 50,000원 이상	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
5. 축의금	본인 결혼	550,000원	
	회원 직계자녀 결혼	350,000원	
	회원 회갑	500,000원	회갑 전 정년(명예) 퇴직자는 전별금으로 대체(500,000원)
	부모 회갑	300,000원	
6. 조위금	회원 사망	1,550,000원	
	회원 배우자 사망	750,000원	
	부모 및 자녀 사망	550,000원	
	회원 배우자의 부모 사망	350,000원	
7. 상조물품지원비		100,000원	조위금 지급 대상자에 한함
8. 위로금 (회원)		200,000원	
9. 삭제<2016.12.09>		-	
10. 퇴직기념품		3년 이상~10년 미만 : 500,000원 10년 이상~20년 미만 : 1,000,000원 20년 이상~30년 미만 : 1,500,000원 30년 이상 : 2,000,000원	·지급기준: 회원 퇴직 시 지급 (단, 징계에 의한 권고사직, 해임, 파면 등은 제외) ·산정기간: 상조회 가입 기간
	삭제	삭제	
11. 삭제		-	삭제

<별표 2> 삭제